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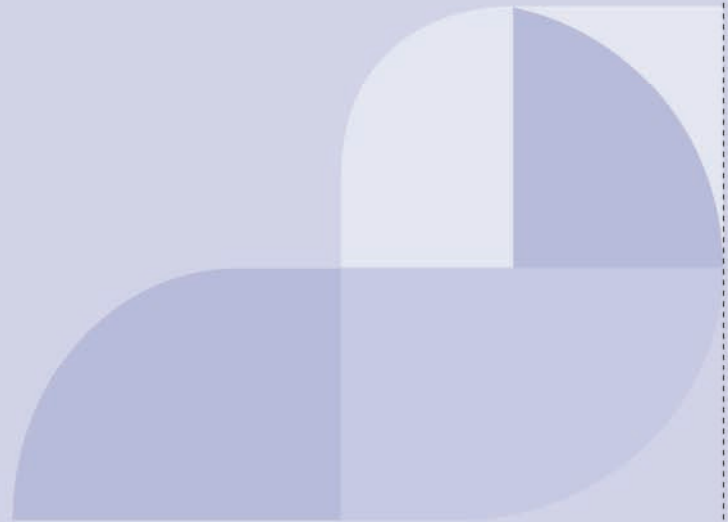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 | 제1장 |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 | 제2장 |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 | 제3장 |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 | 제4장 |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 | 제5장 |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 | 제6장 | 기타 사례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정정보도 사례 01 2022광주조정19·20/21·22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조합장의 이권 전횡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를 게재하되 별도의 민사상 책임은 묻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형사고소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J 씨가 조합장 당선 직후 자신이 경영 중이던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기고,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단호박을 법인 저온창고에 보관해 가족 농장에서 수확한 단호박과 구별 없이 판매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으며, 법인 이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중요 부서의 팀장에 보직하는 등 이권을 전횡하거나, 조합장 신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단호박 선전 광고를 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인이 감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은 조합장 당선 전 폐업했으며, 법인 이사는 전임 조합장 재임 시절 직원으로 채용됐고, 신청인 소유의 단호박 전문 보관창고를 농협에 무상으로 임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단호박을 장기 저장하였을 뿐, 조합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호박 광고를 하는 등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 접수 후 취재활동을 거쳐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했음을 강조하면서도, 법인 폐업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정정보도 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되 당시 진행 중인 형사고소 절차는 유지되길 원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상 책임만 묻지 않는 부제소 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조합장은 2년 전 조합장 당선 직후 경업금지 농협법에 따라 자신이 대표로 경영 중이던 영농조합 법인 ○○○○ 대표직을 사임한 후 자신의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겨 계속적으로 가족회사 격이 된 ‘○○○○○○’을 이용 직권을 남용한 사례들에 대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써 단호박은 △△ 농협 조합원들의 특산품으로 알려진바 농민이 수확하여 수매한 단호박을 가족 운영 영농조합 법인(○○○○○○)의 저온 창고에 보관 자신 가족 농장에서 수확한 단호박과 구별 없이 판매하므로 조합원들로부터 “품질이 좋은 것은 자신의 물량인 양 판매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가 하면 가족 소유 법인 농장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해임 절차 없이 △△농협에 직원으로 채용, 핵심 중요 부서로 알려진 농협□□ ◇◇팀장으로 보직하는 등 조합장 직위를 이용한 이권 전횡을 성토하고 있다. **[중략]**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신분을 가족 법인 회사를 배경으로 ☆☆☆ 쇼핑몰에 단호박 선전 광고를 하는 행위는 조합장 신분을 남용한 조합장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며 조합원의 단호박이 마치 ○○○○의 생산품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문

보도부제목: ▽▽ △△농협조합장 직위이용 이권 전횡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XX. X. X자 사회면에<▽▽ △△농협조합장 직위이용 이권 전횡>이라는 제목과 <지역특산품 단호박 수거 및 판매 경영 금지조항 위반> <가족 경영법인 쇼핑몰 광고 조합장 신분 모델 부적절>이라는 소제목으로 ▽▽ △△농협조합 조합장인 정<<씨가 조합장에 당선된 직후 자신이 대표로 경영 중이던 영농조합 법인 ○○○○○○ 대표직을 사임한 후 자신의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겨 계속적으로 가족회사 격이 된 ‘○○○○○○’을 이용 직권을 남용하였고, 가족 소유 법인 농장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해임 절차 없이 △△ 농협에 직원으로 채용, 핵심 중요부서로 알려진 농협□□ ◇◇팀장으로 보직하는 등 조합장 직위를 이용한 이권 전횡을 하였으며, 농민이 수확하여 수매한 단호박을 가족 운영 ‘○○○○○○’의 저온 창고에 보관 자신 가족 농장에서 수확한 단호박과 구별 없이 판매하였으며,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신분을 가족회사 법인 회사를 배경으로 ☆☆☆ 쇼핑몰에 단호박 선전 광고를 하는 행위는 조합장 신분을 남용한 조합장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며 조합원의 단호박이 마치 ○○○○○○의 생산품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농협조합 조합장인 정<<씨는 조합장에 당선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의 대표를 사임하고 자신의 부인에게 대표권을 넘긴 사실이 없고,



‘○○○○○’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을 △△농협에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농민이 수확하여 조합이 수매한 단호박과 신청인이 생산한 단호박을 ‘○○○○○’의 저온 창고에 보관하여 구별 없이 판매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 신분이나 가족회사 법인 회사를 배경으로 ☆☆☆ 쇼핑몰에 단호박 광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4면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주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주제목과 같은 크기로, 부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통상의 기사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통상의 기사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마지막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정정보도 사례 02 < 2022서울조정325, 326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국회의원)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일부 열람차단)

국회의원에 대한 송방망이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를 게재하면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동영상 속 진행자의 발언을 일부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차명 계좌 운영과 허위 인턴 급여 수령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검찰 수사가 고발된 지 근 1년 만에 소환도 아닌 서면 조사 한 번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고발된 지 9개월째에 검찰의 서면 조사에 협조하였기에 ‘근 1년’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됐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한 번의 서면 조사에 그쳤다’고 허위 보도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와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이미 다수 언론에서 근 1년 만에 검찰이 신청인에게 서면을 보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청인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정정보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검찰 수사 일정 관련 자료를 증재부에 제출했으며, 증재부는 신청인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 협조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2개 동영상 속 진행자 발언에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열람차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의원에 대해선 고발된 지 근 1년 만인 지난 5월 소환 아닌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 의원 검찰 수사’ 관련 정정보도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고발된 지 근 1년 만인 지난 5월 소환 아닌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 의원은 고발 이후 10개월째인 20XX년 4월경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였고 같은 해 10월경 검찰의 요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위 포털에 한함)에게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2개 동영상(유튜브 채널 영상 및 추천영상) 내용 중 “신청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1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는 취지의 진행자 발언을 모두 삭제한다.

정정보도 사례 03

**2022서울조정414·415·416,
2022서울조정417·418·419 (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기사수정)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 논란 보도와 관련, 매체유형별로 정정보도문을 달리 게재하고, 인터넷신문 보도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A 과장의 폭언으로 병원장을 제외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으며, 퇴직한 의사들이 본인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법무부 민원 내부조사결과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 된 것일 뿐 감찰이 진행된 바 없음에도 조정대상보도 이후 다수 언론에서 조정대상보도를 인용해 후속 보도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의 입장을 청취해 의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법무부 민원조사결과,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검토해 조정대상 매체별로 정정보도문안을 달리 마련하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청인의 반론을 보완해 기사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6개 매체 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정정보도 및 기사수정)이나 취하(열람차단, 정정 및 반론보도)로 종결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전략] 치료감호소 A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의혹이 집단 사표의 도화선이 됐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략]**

병원장을 제외하면 전일제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원이 그만둔 것이다. **[중략]**

의사들은 A 과장의 폭언 등에 반발해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치료감호소에서 수련 중인 한 전공의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해 법무부는 현재 A 과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중략]**

A 과장 측은 “검찰과 법원에 치료감호 영장 청구와 발부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라고 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① (신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쌓인 불만, 폭언에 터졌다…○○ 치료감호소 의사 ‘집단 사표’>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XX. X. X.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과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한 의사들이 A과장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민원 조사로 밝혀졌으며, 소속 의사 전원이 그만둔 것이 아니고 법무부 감찰이 진행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보도문 ② (인터넷신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치료감호소 의사 집단 사표에 법무부 진상조사…무슨 일 있었길래>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XX. X. X.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과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한 의사들이 A 과장의 폭언에 반발해 집단사표를 낸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이 법무부의 민원조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사회>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인터넷신문 조정대상 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A 과장 측은 “검찰과 법원에 치료감호 영장 청구와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라고 했다.

(수정 후) A 과장은 “사표를 낸 B 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로부터 ‘전국 법원·검찰·경찰에 직접 전화하거나 공문을 보내 치료감호영장신청·청구·발부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라’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법행정업무를 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사례 04 < 2022서울조정861·862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시민단체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면서 단체명을 오기한 것과 관련, 언론사가 원보도를 수정한 이후, 오기라는 취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별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단체가 국가지원금으로 고액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조정대상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 보도해 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심리가 개최되기 전 단체명을 잘못 표기했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기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단체가 관련이 없음을 알리는 취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해 피해구제 효과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측은 이와 관련 리모델링 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절차와 비용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 관계자는 “김 회계사의 주장처럼 리모델링에 국고가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체 재정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 측은 공사비와 관련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 회계사의 공개와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리모델링과 관련해 비용과 계약서 공개를 할지 여부는 이사회 등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 장△△ 팀장은 국고 지원에 대해 20XX년 26억 3천만 원(□□□ 21억 + ◇◇◇ 5.3억)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2억 3천만 원을 반납했다면서 국고지원은 사업비와 인건비, 비품비에 사용되며 회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립니다] <김☆☆ “▽▽▽ 리모델링 평당 500만 원, 이사들 ”너무 모자랐다. 다른 명목으로 었었다”> 관련

본문내용: 본지의 조정대상보도 본문 중 ○○○○는 ▽▽▽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는 “○○○○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로서 해당 기사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사회> 섹션 기사목록(상단 3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05 < 2022대전조정40·4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상의 난항을 예상한 보도와 관련, 인터넷신문과 함께 재건축 추진위원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인근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남편을 조합장에 출마시킨 후 지지를 호소하며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현 위원장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퇴진을 종용하는 등으로 괴롭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거나 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남편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없으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현 위원장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보도해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 이후 신청인의 반론을 반영해 2차례 후속보도 한 사실이 있으나 여전히 신청인과 제보자 간 입장차이가 큰 점을 인정해 정정보도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정정보도와 더불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사안의 특수성과 피해구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한 익명의 제보자는 “인근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본인이 중개해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현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합장 및 임대의원 선출로 선거가 진행 중인데 기존 재건축 사업에 관심도 없었던 자신의 남편을 조합장으로 출마시키고 공개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제보자는 “두세 달 전에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찾아와 현 위원장에게 욕설과 폭언 등은 물론, 노골적으로 물러나라는 등, 여러 차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괴롭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CCTV까지 설치한 상태”라면서 “인근 ○○○○주공아파트에 비해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이미 몇 년이 늦어진 상황에 이제야 소유주들이 화합을 하고 안정적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리사욕을 위한 이기주의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격분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주공아파트... 일부 소유주 갈등으로 난항 예고>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인근 공인중개사가 현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자신의 남편을 조합장에 출마시킨 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현 위원장에게 욕설, 폭언 및 퇴진을 종용하며 괴롭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현 추진위원회를 비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표명한 사실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방문한 사실도, 현 위원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퇴진을 종용한 사실도 없어 CCTV를 해당 공인중개사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며(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제목은 굵게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주공아파트 소유주들로 구성된 2개 단체 카카오톡방 (△△□□주공재건축방 및 동의서 제출방)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정정보도 사례 06 < 2022서울조정1733·1734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연속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으로 각각 합의해 피해구제 효과를 높인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 단체의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단체가 특정 민간 법률 플랫폼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신청인 단체가 출시한 공공 법률 플랫폼의 하루 평균 사건의뢰 건수가 2개월 동안 2건을 밀돌고 있으며, 단체 내부규정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신청인 단체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 단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민간 법률 플랫폼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체는 다른 단체로, 신청인 단체의 공공 플랫폼을 통한 사건의뢰 건수는 실제로 훨씬 많고, 신청인 단체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단체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취재원 진술내용 등을 반영해 기사화했고,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대립 당사자들의 주장을 균형감 있게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들의 보도내용이 서로 다르며 일부 표현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대상보도별 피해구제보도문을 각각 마련함이 적절해 보인다고 양 측이 문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정정 및 반론보도와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일부 기사는 본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전략]** 검찰은 변호사 단체인 ○○○○○○○○이 △△△△△ 등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박□□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 광고를 막은 ☆☆☆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후략]**

② **[전략]** ▽▽▽▽▽▽(☆☆)가 ‘◇◇’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대안으로 내세운 ‘◎◎ ◎◎◎’가 출시 2개월 동안 의뢰가 하루 평균 2건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는 변호사 찾기,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단 3건의 메뉴를 제공한다. 변호사나 의뢰인 본인이 아니면 다른 의뢰인이 맡긴 사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수입료나 상담 비용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중략]**

☆☆은 ‘◇◇’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사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 기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 <<<에 관한 규정과 윤리 장전을 각각 개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후략]**

③ **[전략]** ‘◇◇’ 운영사인 △△△△△는 “위헌 결정을 받고도 ◇◇ 회원 변호사들에게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한 데 강한 유감”이라며 “☆☆의 징계 근거는 이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반발했다.

△△△△△는 “☆☆의 징계 강행은 현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에 신고와 고발을 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와 검찰·경찰은 모두 변협이 신고와 고발을 무혐의로 판단했고, 현재는 지난 26일 ☆☆☆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후략]**

④ **[전략]** 현직 변호사들로 이뤄진 ▷▷ ▷▷ ▷▷ ▷▷ ▷▷ 변호사 모임(이하 모임)은 이소순 ☆☆☆회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중략]**

모임은 또 ☆☆☆이 징계 근거로 삼은 ‘<<<< <<<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 회장 등이 ‘현재의 합헌 결정으로 ◇◇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한다. **[중략]**

모임은 아울러 ☆☆☆이 현재 심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 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모임은 강♡♡ 전 고검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번 형사 사건에 대응한다.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 대안’ ☆☆ 공공플랫폼, 의뢰 하루 2건 밀돌아」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 ②에서 ☆☆과 관련한 사항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단체는 ∇∇∇∇∇∇∇가 아니고 ○○○○○○○○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또한, ∇∇∇∇∇∇∇ 측은 “○○ ○○○’는 ◇◇과 다른 공공플랫폼으로서 개별 변호사의 수입료나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 ○○ ○○○를 이용한 사건 의뢰는 위 사건의뢰 게시판 외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올린 프로필만을 보고 변호사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현직 변호사들, ‘◇◇’ 막는 ☆☆ 간부진 경찰에 고소」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 ④에서 ☆☆ 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 측은 “☆☆ 임원들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결의내용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현재 심판 대응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한 것도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 및 ☆☆의 회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이 아닌 등 고소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뉴스통신 홈페이지 사회>법원/검찰섹션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②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④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뉴스통신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① 본문 수정〉

(수정 전) 공정거래위원회도 ◇◇ 광고를 막은 ☆☆☆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수정 후) 공정거래위원회도 ◇◇ 광고를 막은 ☆☆☆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정정보도 사례 07 < 2022전북조정37·38/39·40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고위공무원)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부군수의 직원 근무평정 관여 및 폭언 등 갑질 의혹 보도와 관련, 원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반론을 보장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부군수가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고유 권한인 직원 근무평정과 근무지 배치에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 직무대리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확인자로서 평정자인 보건소장 직무대리에게 업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보건소 직원의 근무지 배치 과정에서 보건소장 직무대리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편파 보도해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를 통해 확보한 제보자 진술 등을 반영해 기사를 작성했고, 조정심리 당시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건대 신청인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월권행위인지 여부는 자치법규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A 부단체장이 ○○군보건소장 직무대리에 대해 업무관련 권한의 도를 넘어 직원 근무평정에 대한 월권행위까지 △△△ B 과장과 조율, 상의해서 보고하라는 지시 명령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중략]

이번 보건소 인사 시 A 부단체장이 모 직원을 □□□□담당 자리에 배치하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처사와 또 소장 직무대리와 보건소 C 과장이 직원 근평을 조정, 조율해서 보고하라 했음에도 직무대리는 독단적 일처리를 했으며, 이에 A 부단체장은 △△△ B 과장을 시켜 다시 조정해서 작성 보고하라 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소장직무대리는 폭언과 업무상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중략]

A 부단체장은 조직 직제 상으로는 위에 있지만, 군수의 명을 받아 공적인 ○○군 보건소장 자리 또한 4급 직무대리이므로 근평뿐만 아니라, 근무지 배치도 관여할 수 없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 ○○ 부단체장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군 부단체장이 보건소 소장직무대리에 대해 업무관련 권한의 도를 넘어 근무평정과 직원 근무지 배치에 관여했으며, 폭언과 업무상 갑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군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보건소 근무평정자는 보건소장이며 확인자는 부군수이고, '◇◇◇◇◇ 평정규칙' 제8조에 의거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 부군수가 근무평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위 기사에 대해 김☆☆ 전 ○○군 부군수는 보건소 인사 및 근무평정과 관련해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일간신문 8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정정보도 사례 08 2022서울조정1939, 2022서울조정1971-1972 (병합)

정정청구,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1. 단체(국가기관), 2.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공직자의 인터뷰 보도와 관련,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자료사진 설명의 정정과 반론보도문 게재 및 기사수정을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태풍 영향으로 영남권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외부 행사에 참석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직원이 취재기자에게 ‘산사태 경보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 보도해 신청인 기관의 신뢰가 저하되고 소속 공무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정대상보도에서 직원의 사진을 삭제하고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고,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심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취재 경위 등을 확인했으며,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자료사진의 설명을 정정하고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정 및 반론보도와 기사수정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임○○ △△청 □□이 19일 오전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영남권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말해 무사안일 △△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포토]임○○ △△청 □□ “산사태 경보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지난 ◇월 ◇일자 전국뉴스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보도에 게재된 사진에 관한 설명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임○○ □□은 “△△ 관련 행사 후 이동 중 기자의 질문을 받고 외부 행사 중이라 필요한 자료나 민원이 있으면 대변인실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고, 산사태 경보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말해 무사안일 △△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정 후) “외부에 나와서 전국 어느 지역이 산사태 경보지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정보도 사례 09 < 2022서울조정214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국가기관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도심 내 대규모 인명 사고 및 경찰 인력 부족 사태 등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원보도를 자체 수정하였으나, 독자들이 기사 수정 경위 등을 알 수 있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도심 내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 당일, 현장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일반 경비는 물론 지원업무도 맡을 수 있는 경찰 인력인 경비단 약 200명이 대기 중이었지만 위 사고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기관은 업무 규정에 따라 경비단의 관할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특정지역 경비에 한정되며, 대통령 관저는 경호보안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보호시설로 사전 안전 확보는 물론 24시간 안전유지가 필수적인 장소이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 배치된 총 인원은 약 〇〇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200명으로 허위·과장 보도해 신청인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빈집’이라는 표현과 경비단 규모 등의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미 정정보도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기관이 조정대상보도에 언급된 ‘△△△경비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정대상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지만, 신청인 기관이 대통령 관저 경비업무 관장 기관으로서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수치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되 독자들이 조정대상보도의 수정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신청인 입장을 반론보도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서울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도 경찰 인력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초구 자택에서 지내고 있어 한남동 관저는 현재 ‘빈집’이다.

관저에 배치된 경력은 △△△경비단이다.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경찰 조직으로 관저 외곽을 지키는 임무를 맡지만, 현재 빈 공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과 인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 참사, 경력 부족 사태 등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경비단은 서울경찰청의 직할대로 특정 지역 경비 외에도 일반 경비는 물론 지원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중략]**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경비단’ 소속 3개 중대가 배치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개 중대가 투입됐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1개 중대가 배치됐다. 약 200명 규모이다. 교대 근무 형태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상황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았다.

하지만 한남동 관저는 현재 빈집이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 머물고 있어서다. 참사 당일 서초동 자택 인근에도 다른 4개 기동대가 주·야간으로 배치됐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단독]참사 당일 ‘빈집’인 尹관저 지킨 경찰…지원 불가했다」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일반 경비 등도 맡을 수 있는 △△△경비단 인력 약 200명이 대기 중이었지만 ‘빈집’인 대통령 관저 경비를 이유로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저 경비에 투입된 인원은 200명이 아니라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는 “대통령 관저는 경호보안이 필요한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위협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빈집’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사건/사고>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반론보도

사례 01

2022경기조정14·15·16/17·18·1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토지 인허가 절차상의 부정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건축설계업자 A 씨가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청탁을 했고, 관련 심의가 부결되자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이후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적이 없음에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허위 제보만을 근거로 보도해 심각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다수의 제보자 진술과 입증자료 등을 확보해 조정대상보도를 작성했기에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청인은 심리 과정에서 인터넷신문의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재부는 반론보도를 게재와 피신청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대상보도

○○ △△시의 한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가 관련 부서에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가 부결되자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지 기자까지 나서 허가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사무소장 A 씨가 △△시 건축과에 방문한 건 지난해 10월.

□□면 ◇◇리 토지가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씨가 관련 부서 직원에게 재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A 씨는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직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략]**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횡포를 부린 것인데, 이후 A 씨가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단독] △△ □□ 개발허가에 지방 일간지 기자 ‘로비’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 A씨가 관련 부서에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했고 담당 공무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12시간 동안은 뉴스면 주요뉴스목록 상위 10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일(화) 09:00까지 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검색을 차단하고 향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반론보도 사례 02 < 2022서울조정162·163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일부 열람차단)

자동차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인 A 회사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사에 인용한 사외이사와의 통화내용과 관련해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해당 표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자동차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A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B 회사를 140억 원(40억 원은 회삿돈, 100억 원은 대여금)에 인수한 후, A 회사의 현 대표 및 총괄 대표 등을 B 회사의 사내이사로, 은행 출신 윤 모 씨를 B 회사의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5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는 '셀프투자'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사외이사인 윤 모 씨는 피신청인과의 통화에서 "나는 이름만 올렸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취재기자에게 "나는 이름만 올렸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B 회사의 사외이사인 본인이 회사 중요 사안을 의결하면서 상정안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경영진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A 회사 주식 매입에 찬성한 것처럼 왜곡 보도해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기자가 신청인과 통화한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하였다면서도,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 본문에 언급된 신청인과의 통화내용 부분을 삭제하거나,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인터넷신문 외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동일 보도가 게재된 만큼 인터넷신문과 지면에 모두 반론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보도문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이 적절해 보인다고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두에 반론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상장회사 ㄱ이 ㄴ기업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상장사 ㄱ의 이사회엔 ㄴ의 대주주와 임원이 이사로 참여한다. 사실상의 ‘셀프 투자’인 셈이다. **[중략]** <○○○>가 A 회사 쪽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B 회사’(옛 △△△△△)의 자금 거래를 추적한 결과다.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문제는 B 회사의 A 회사 투자 결정을 내린 게 A 회사 쪽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는 지난 6월 B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직후 임시주총을 열어 B회사의 이사를 모두 교체했다. 강◇◇ A 회사 대표와 이☆☆ A 회사 총괄 대표, 한 아무개 전 ▽▽ 자문역 등이 B회사의 새 사내이사로, ◎◎은행 출신 윤 아무개 씨가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중략]**

B 회사 쪽은 A 회사 주식을 고가에 인수한 게 “전기차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사회 출석 이사 전원이 상호 신중한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삭제)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왔습니다] 「[단독]<◁◁◁ 인수추진> A 회사 쪽, 상장사 40억 넣고 500억 빼갔다」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B 회사의 윤 아무개 B 회사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이름만 올렸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경제>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시점부터 최초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일간신문 2면(지면)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내용 중 < …… > 문장을 삭제한다.

반론보도 사례 03 < 2022서울조정891·892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지방자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조정대상보도를 자체 수정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경위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추가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과거 평균 대비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분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자체 계산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업체는 친인척을 대거 고용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4년간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은 2019년 104억 원, 2020년 156.9억 원, 2021년 162억 원, 2022년 예산 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증액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전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해 연간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용역 소요 기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간을 넘어서는바 추경 과정 중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시는 과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 임원의 급여를 두 차례 조정·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잘못 보도해 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신청사건이 접수된 이후 최근 4년간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관한 본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으므로, 정정보도 게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양 측이 반론보도 게재로 문안을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의혹의 핵심은 ○○ 시내버스업체인 (주)△△△△△에 과도한 재정지원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2019년 87억 59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2020년 8억 정도 증액한 9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1, 2차 추경을 통해 55억 7500만 원, 10억 원이 각각 추가로 지급됐다. 보조금 총액은 161억 38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73억 79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시는 2015년 75억 원, 2016년 70억 원, 2017년 73억 원, 2018년 85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바 있다. 과거 5년 평균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액수가 보조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2020년 급격히 보조금을 상승시킨 뒤 지난해에는 119억 9천만 원, 올해는 96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며 예년 수준으로 보상 액수를 점차적으로 인하였다. **[중략]**

보조금 지급은 매년 외부 용역을 토대로 시내버스 운영의 손익을 분석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급된 약 65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분이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 과정에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시청이 자체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더 의문스러운 점은 보조금 증액과 함께 해당 업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주)새천년미소는 2019년 3월 A 씨가 인수했는데, 그다음 달부터 대표이사과 감사 급여가 인상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임원들의 급여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 입수한 (주)△△△△△ 임원 급여 인상 현황에 따르면 A씨는 한 달 기본급 13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무이사이자 사내이사인 B씨의 기본급은 48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무려 212% 증가했다. 감사인 C씨의 경우 23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108% 올랐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시가 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전년에 비하여 2배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한 보조금 액수는 2019년 104억원, 2020년 156.9억원, 2021년 162억원, 2022년 예산 124.8억 원이며, 2020년부터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시는 추가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연간 원가를 산정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소요되는 기간(2개월 내지 4개월)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요되는 기간(약 1개월)의 불일치로 추경 과정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2020년 9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두 차례 조정을 통하여



A씨의 한 달 기본급을 1500만 원으로, B씨의 기본급을 700만 원으로, C씨의 급여를 220만 원으로 삭감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사회>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반론보도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04

2022서울조정1210·1211·1212, 1213·1214·121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사수정, 동영상 플랫폼 조치)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불법 채혈행위가 있었다는 방송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병원 건물 전경을 모자이크 처리하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의료법 상 채혈과 같은 의료 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한 치과의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치과위생사들이 채혈을 해왔고, 2년간 피해자가 거의 1천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병원 측이 문제제기를 계속 묵살해왔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채혈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한 시점부터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는 중단됐고, 임상병리사 역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하게 채혈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채혈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왜곡보도하면서 ‘피해자가 1천 명 정도에 이른다’는 등 제보자의 편향된 진술과 치과의원 건물 전경을 그대로 방송해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의 삭제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치과위생사들의 불법 채혈 문제를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취재했고, 방송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진실성이 인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제보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이후로 병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론보도를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병원에서 부적절한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정대상보도에서 피해자가 1천 명에 이른다고 언급하거나 치과의원 전경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한 부분은 피해구제가 필요해 보임을

지적하며, 반론보도를 게재하면서 치과의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되, 피신청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도 동일하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치과의원 전경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현행법상 환자의 피를 뽑는 것은 의료행위라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치과위생사들이 채혈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중략]

A 병원은 임플란트 시술 중 뼈 이식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의사의 시술 보조와 스케일링, 치아 본뜨기 등을 맡는 치위생사들에게 채혈을 시켰다고 직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전 직원 : 한 2년 동안은 거의 한 1천 명 정도 피해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저희 이야기를 묵살했고...]

의료법상 채혈 같은 의료 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무자격 채혈 강요해 서로에게 연습>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보도 대상 치과의원이 계속적인 직원의 문제제기를 묵살하였고, 의사나 간호사만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직원의 문제제기가 있는 이후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를 중단하고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직접 채혈행위를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년간 1,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면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들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기사 수정사항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중 신청인 치과의원 (△△△△△△△△) 전경 사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강하게 모자이크 처리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들은 <□□□ 뉴스>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 사례 05 2022충북조정14·15·16/17·18·19**각 정정·반론·손배청구****신청인 유형** 1. 단체, 2. 개인**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주택조합장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 씨가 지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올 예정이었던 경쟁자 B 씨를 금품으로 매수한 뒤 단독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1. 단체는 B 씨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 임원 피선출권이 없으며, 신청인 2.(A 씨)가 B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금원은 과거 조합이 미지급한 조합원 모집 수수료일 뿐 조합장 선거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허위 보도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방송, 방송사 홈페이지 및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정 및 방송보도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입수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보도했고, 대립 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을 균형감 있게 보도했기에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취재과정, 신청인들과 제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하되, 피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하단 설명란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와 논란입니다.

현 조합장이 사전에 경쟁자를 금품으로 매수해 단독 출마했고, 결국 선출됐다는 건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략]**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올 예정이었던 경쟁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조합장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는 건데 이 같은 내용은 전 조합 소속 임직원인 B씨가 조합원들에게 양심선언을 한다며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현 조합장의 부정 청탁 행위를 주장하는 B씨는 “그로부터 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했었다”고 강조하며 부정선거에 대해 관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이들 간의 법적 공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금품 제공 약속’ vs ‘사실 무근’...지역주택 조합장 선거 논란」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와 논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측은 “조합 임원의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이 아닌 B씨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사람이고, 조합장 A씨가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B씨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하단 설명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 사례 06 < 2022서울조정1601, 160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노동조합)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논평 보도와 관련, 의견 표명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갖게 되어 특정 정당과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길이 열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갖는다고 법률 개정안에 명시되거나 특정 정당과 손잡고 공영방송이나 언론 장악을 꾀한 사실도 없음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언론 관련 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가 논평에 해당해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내용을 단순한 의견표명으로만 보기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했고, 보도문의 길이 및 게재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당이 새롭게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는 전혀 다르다. 이사회를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운영위원 25명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당 몫 4명을 포함해 8명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한 듯 보이지만 전혀 아니다. 나머지 17명의 추천권을 대부분 좌파 △△노조가 갖도록 설계해 ○○당이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중략]**

시청자위원회도 3명을 추천하는데 정부가 2018년 노사 합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여기에도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법이 통과되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될 단체들이 입법을 방해할 경우 “강성 노조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좌파 진영의 ‘반지성적’인 언론 장악 꿈수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① (일간신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 관련, 본보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17명 추천권을 대부분 △△노조가 갖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로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도, 공영방송 장악을 꾀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 ② (인터넷신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5월 19일자 “[오늘과내일] ○○당의 ‘□□□·◇◇◇ 영구장악법’ 꿈수” 관련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 관련, 본보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17명 추천권을 대부분 △△노조가 갖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로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도, 공영방송 장악을 꾀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일간신문 <피플&투데이>면에 반론보도문 ①을 게재하되, 보도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본문활자와 같게 하고, “[반론보도]” 부분은 볼드 처리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최신기사>섹션에 반론보도문 ②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오피니언>최신기사>섹션 기사목록(상단 3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②를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07 < 2022서울조정1683·168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조정대상보도 영상이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만 남아 있어 해당 유튜브 채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학교 인근 유해업소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라이더 카페를 리얼돌체험방·성인용품점 등과 함께 방송에 내보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 중인 카페를 리얼돌체험방·성인용품점 등과 함께 엮어 방송에 내보내 일반 음식점인 신청인 카페가 마치 유해시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고 카페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학부모, 주민 등의 제보 접수 후 현장 취재를 거쳐 보도했으며, 조정대상보도에서 라이더 카페의 상호가 노출되거나 특정되지 않도록 흐림 처리했고, 실제로 라이더 카페 관련 다수의 민원 제기 및 반대운동이 있었던바 보도의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심리 당시 조정대상보도물이 피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만 남아있음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카페가 보이는데요?
지금 도착해서 보니까 1분 넘게 걸렸습니다. 1분 9초. **[중략]**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인용품점은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데다 성인용품점 인근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라든가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며 충분히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카페 사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카페 주변에 주유소가 있고, 또 주유소 인근에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통학로였죠. 그래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학교 앞 인도에 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과거에는 펜스가 없어서 오토바이가 초등학교 앞 인도까지 진입해서 아찔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왔습니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근절해법”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구 한 학교 근처 카페와 관련해 생긴 논란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운영자는 “유해업소인 성인용품점과 함께 보도되어 유해업소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본 카페는 라이더 전용 카페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서 유해시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 △△△△△>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설명란 가장 윗부분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한다.



반론보도 사례 08 < 2022서울조정1832, 2022서울조정1957(병합) 각 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공공기관장)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공공기관장의 부정 채용 청탁 의혹 등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4건의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기관장 취임 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했고, 과거 구청 재직 시절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를 작성해 직원에게 전달하며 채용인원의 80%를 뽑으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기관의 신규문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단순히 의견을 물었을 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과거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원자 미달 사태를 우려해 자치구 내 대학교로부터 지원자 추천을 받아 일자리를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사실이 있으나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없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편파 보도로 인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원 인터뷰와 통화 내용, 근거자료를 확보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반론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반론보도 게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증재부는 보도문안을 협의해 반론보도를 하되, 피신청인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란에도 반론보도문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고정 게시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이○○ △△문화재단 사장이 직원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단 노조는 이 사장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 □□□□센터 게시판에 붙은 노보입니다.

현 △△문화재단 이○○ 사장이 본부장 재직 당시 직원에게 정당의 지구당 전적 신청하는 방법과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지부 □□□□센터 노조는 이○○ 사장이 전적 신청 외에도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확인된 직원만 8명에서 10명.

노조는 이○○ 사장이 본부장이었던 지난해 8월 개별적으로 불러내거나 SNS를 통해 ☆☆☆☆☆☆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략]**

② △△문화재단 청년 일자리 사업 채용 과정에 부정 청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채용 전에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가 있었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까지 어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략]**

채용 인원의 80%는 사전에 리스트를 통해서 설계하고 20%만 일반 응모 청년을 뽑으라고 지시합니다. 직원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며 항의하자 자신의 방에서 보자고 합니다. **[중략]** △△문화재단 노조원들은 이○○ 사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③ △△문화재단 공무원 노조원이 이○○ △△문화재단 사장을 불법 채용 청탁과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19년 청년 뉴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를 직원에게 전달해 채용인원의 80%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직위를 활용해 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함께 고발장에 포함됐습니다.

④ **[전략]** △△ □□□□센터 정문에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켓에는 승진에 눈이 멀어 선거운동을 한 직원들도 당장 조사하라, 낙하산 인사 조사하라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센터 노조는 이○○ △△문화재단 사장이 △△청 기획관 시절부터 채용 규칙을 바꿔가면서 자기 사람 심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출신 직원을 다수 채용했고 근속기간을 무시한 편법 승진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가입을 권유했고 지난 지방 선거운동을 위해 무리하게 재단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장이 지난 20XX년 △△ 기획관 당시 청년 일자리 사업 과정에서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를 직원에게 건네며 여기서 전



채용 인원의 80%를 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문화재단 사장 정당 가입 강요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센터 노조가 이○○ △△문화재단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 강요의혹, 채용 부정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문화재단의 모든 인사는 정해진 인사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특정한 인물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 또한 이 전 사장이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의회가 재단 신규문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 전 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은 일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20XX년 청년뉴딜사업의 예산을 받은 상황에서 홍보부족으로 미달될 것이 확실하여 △△ 내 대학교 및 예술가들에게 홍보해 지원자 추천을 받은 것이지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보도방법

-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뉴스>서울면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각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 설명란(첫 고정댓글)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한다.

반론보도 사례 09 < 2022경기조정191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종교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한 기독교 교단이 특정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종교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기독교 교단이 신청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결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종교단체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가 자신 단체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반복되는 거짓말과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종교단체는 중국인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파송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대상보도에 언급된 인도 불교사원에서의 찬양 기도 등 논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바 없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해 종교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거나 보도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종교단체의 이단 여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는 게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논점을 반론보도로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 종교단체는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신청인 종교단체가 심각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타 매체(인터넷신문) 보도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양 당사자가 네이버, 다음, 구글의 통합검색 결과에서 해당 보도가 제외되도록 기사에 대한 ‘웹 크롤링(데이터 수집) 비허용 조치’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총회장 김□□ 목사)이 20XX년 X월 XX일 열린 총회에서 ◇◇◇(최☆☆ 본부장)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에 대한 논란은 20XX년 ☆☆ ▽▽측의 예의주시·참여자체 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줄곧 주요 교단의 논점이 돼 왔으나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결의한 것은 ◎◎ <<이 최초이다. [중략]

반복되는 거짓말과 사실 왜곡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20XX년 X월 인도 ▷▷▷▷ 불교사원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일로 사회적 공분을 사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사실관계와 정황이 제시되고 나서 인정한 점 △20XX년 X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가 ◇◇◇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가 ◇◇◇임을 확인하고 한국선교사들까지 추방하는 빌미로 작용한 점 △20XX년 X월 X일 ♪♪♪♪♪가 ♡♡♡♡가 ◇◇◇에 대해 2년간 회원자격과 활동을 정지했다고 기사화하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나 사실이었던 점 △최●● 본부장의 저서 '▲▲▲▲▲'를 회수하고 출판 금지한다고 했으나 동일 내용을 담은 '■ ■ ■ ■ ■'라는 만화 형식의 책이 판매됐고 문제가 되자 '저자가 최☆☆ 본부장과 상의 없이 출간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이었다. 결국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측의 개선 의지는 논란을 피해하려는 미봉책일 뿐 진심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측은 평가한 것이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 <<, 교단 최초로 ◇◇◇ 이단 규정」 관련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 20XX년 X월 인도 ▷▷▷▷ 불교사원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일로 사회적 공분을 사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사실관계와 정황이 제시되고 나서 인정한 점 △ 20XX년 X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가 ◇◇◇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가 ◇◇◇임을 확인하고 한국선교사들까지 추방하는 빌미로 작용한 점 △ 20XX년 X월 X일 ♪♪♪♪♪가 ♡♡♡♡가 ◇◇◇에 대해 2년간 회원자격과 활동을 정지했다고 기사화하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나 사실이었던 점 △ 최●● 본부장의 저서 '▲▲▲▲▲'를 회수하고 출판금지한다고 했으나 동일 내용을 담은 '■ ■ ■ ■ ■'라는 만화 형식의 책이 판매됐고 문제가 되자 '저자가 최☆☆ 본부장과 상의 없이 출간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사실왜곡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회 측은 “불교사원에서 찬양한 일로 인터뷰 할 당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맞고, 중국인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파송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은 ♡♡♡♡로부터 사역지도를 받았고 그 기간에 회원으로서 자숙한 것이지 자격이 정지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 ■■■’는 ◇◇◇선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출판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동안은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제1항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10 < 2022서울조정2021/202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아파트 배관 공사 부실 논란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도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낡은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100억 짜리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부실투성'이라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공사를 따낸 업체가 동대표들에게 10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등 '뒷돈이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아파트 급수급탕배관시설의 노후화로 진행 중인 공사가 '부실투성'이라는 주민의 제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 언론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는 공사 현장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해 부실 공사 현장인 것처럼 왜곡하고, 배관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측 간에 뒷돈이 오간 것으로 허위 보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 차단과 함께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자 진술, 현장 취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한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반론보도는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이 보도문안과 이행방법을 협의해 반론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낡은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공사였는데, 공사를 마친 업체가 동대표들에게 리베이트 10억 원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략]

지난 5월부터 녹물이 나오는 낡은 수도 배관을 전부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투성이라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계량기, 제어기, 펌프 같은 중요한 부품들을 교체하지 않고, 낡은 걸 재사용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온수 계량기는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재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물에 담가 놔는데, 이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정밀한 회전부가 막히기 때문에...”] [중략] 그런데 이 공사에 뒷돈이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임원. 입찰 과정에서 공사 업체가 돈 봉투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중략] 한 씨는 돈 봉투를 돌려주고, 회장과 다른 임원들에게 이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사업을 방해하는 거냐는 타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억 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원 : “현재 저희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이라는 □□□ 사장이 직접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가 잘되면 10억 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5억 정도 갖고 나머지는 나눠서 써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죠.”]

한 씨는 거절했지만, 입찰 결과 결국 이 업체와 다른 업체 한 곳이 함께 공사를 마쳤습니다.

[후략]

② 이런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간 게 정말 사실일까, 저희가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들과 증언들을 확보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아파트의 배관공사 입찰공고입니다. 최근 5년, 1천 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네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중략]

그런데 업체들이 써낸 가격이 좀 이상합니다. 마치 서로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중략]

로비와 담합이 만연해 있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중략]

주민들 일부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진실은 수사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100억 공사에 “10억 원 주겠다” - 동대표들 뒷돈 의혹 진실은?>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100억 공사에 “10억원 주겠다” - 동대표들 뒷돈 의혹 진실은?>이라는 제목 등으로 “☆☆☆ ◇◇◇◇◇◇▽▽아파트의 배관공사가 부실투성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뒷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보도에서 공사가 부실 투성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의 현장을 보도한 것이고 실제 뒷돈을 받은 임원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계량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공사에 포함된 부분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의 <뉴스홈>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을 자막 처리하여 게시하고, 영상 설명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한다.

반론보도 사례 11 2022서울조정2200·220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사수정)

시민단체 성명 발표 등을 인용한 특정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표현한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의 반론을 게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의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보도’의 사례로 신청인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 등을 인용한 특정 언론매체의 보도를 언급하고,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모 노동조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반론보도가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시민단체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 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취지의 모 노동조합 측 인터뷰와 함께 신청인 단체의 입장을 허위라고 단정 보도해 사회적 평판이 저해됐다고 정정보도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신청인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모 노동조합 측의 인터뷰는 논평에 해당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조정대상보도 제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재부는 양측이 문안을 협의해 반론보도 게재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의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X월XX일 자)와 △△△△△(X월XX일 자)는 ‘□□노조가 특정 정당과 협약을 맺고 선거 승리를 위해 기여했다’·‘□□노조가 선거가 끝난 뒤엔 주요 공공기관·기구에 직접 참여해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이후 이들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노조는 “◇◇◇◇◇연대(☆☆☆☆☆☆연대)가 내놓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하거나 □□노조 반론조치 보장하지 않은 보도였다”며 “△△△△△는 엉뚱하게도 조정 대상 문장이 담긴 문단을 통째로 지운 채 언론중재위에 출석했다. 기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노조가 방송장악? 언론중재위 결론은」 관련

본문내용: 본지 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연대 측에서는 “□□노조의 주장은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과 □□노조가 개정하려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는 위원 절대 다수가 친□□노조와 친▽▽당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노출시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기사 수정사항

<조정대상보도 주제목 수정>

(수정 전)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허위보도’ 결말은

(수정 후)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언론중재위 결론은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정 후)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론보도 사례 12 2022서울조정2309/2310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벤처회사가 불법로비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권을 취득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 후반에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회사가 매출을 부풀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광고판 독점 사업권을 따낸 의혹이 있고, 회사 대표는 지원받은 정부 자금 일부를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브로커를 통해 불법 로비를 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허위로 매출과 기술인력 현황을 부풀리거나 브로커를 통해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회사 대표가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부고발자와 경쟁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편파 보도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방송과 방송사 홈페이지,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송 분량의 한계로 신청인 회사의 해명을 더 길게 보도하지는 못하였으나, 해당보도는 내부고발자의 증언, 검찰 수사 상황 및 진술조서, 관련 전문가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제보의 신빙성, 검찰 수사 진행 여부 등과 관련해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향후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내부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유튜브 채널 조정대상보도 영상 후반에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요즘 서울에서 택시 표시등 대신 디지털 광고판을 단 택시들, 꽤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 2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천 대 넘는 택시가 이런 광고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탐사팀 △△△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벤처 회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로 매출을 부풀려 사업권을 따내고, 지자체를 상대로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중략]**

해당 시범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곳은 국내 한 벤처 회사.

○○시는 20XX년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시범 사업 기간도 3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중략]**

취재진이 입수한 이 회사 내부 문서입니다.

○○시 담당자들이 애초 해당 사업에 부정적이어서 “다양한 로비 루트 확보 검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각종 브로커를 썼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인허가를 공적으로 따냈던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략]**

허위 매출로 실적을 꾸미고 기술인력 현황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저 같은 경우는 문과를 나왔고 그런데 연구원이 원래는 되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내용을 넣었던 겁니다. 실제로 연구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 회사 임모 대표는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따낸 정부 자금 일부를 아파트 전세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범 사업 운영업체는 “가공된 매출이나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불법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② 서울시의 택시 디지털 광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벤처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고 ○○시에 로비를 한 의혹,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에서도 같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략]**

이 회사 관계자가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심사위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저는 심사위원을 심의 전에 두 차례 만났고, 대표이사는 심의 전에 심의위원과 수차례 통화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해당 심의는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심의 이후 이 회사는 해당 위원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7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위원은 취재진에게 연구 용역비를 받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중략]**

하지만 이 회사 내부 고발자 주장은 다릅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실제 이 회사가 ○○시 심의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서에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심의위원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통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로비는 없었고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디지털 광고판 단 ○○ 택시... 그 이면엔 ‘로비 사슬’> 등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시 디지털 광고판 시범사업 독점권을 따낸 벤처 회사가 연구원 허위등록 및 분식회계를 통해 기술인력과 매출을 부풀렸고,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로비를 한 정황이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대표이사의 전세금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벤처 회사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기술인력(연구원)을 정식 등록하였고, 매출처와 매입처에 모두 기재되어있는 회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금형 및 원재료로 택시탑을 제조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로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가 보도한 ○○시와 □□시에 대한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 근거로 보도한 내부분건은 광고협회 및 방송협회 관계자의 택시 디지털 광고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작성한 것으로 20XX년 지자체 입찰과는 관계가 없고, 대표이사의 아파트전세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했으며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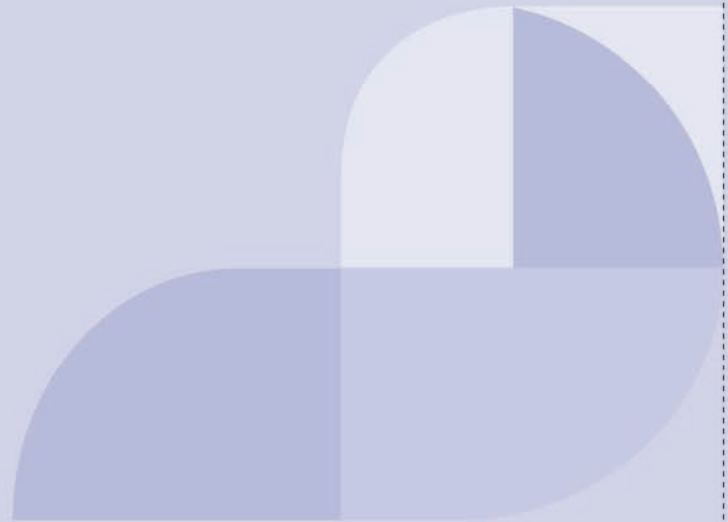
- 방송사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 동영상 후단에 CG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추가한다.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후보도 사례 01 2022강원조정1/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건부 추후보도)

지역어항 요트계류장 불법 운영 의혹 보도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장래 경찰 수사 종결 후 신청인이 언론사에 수사결과를 통지하면 그 결과를 후속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요트 마리나 사업을 하는 신청인 회사가 지역 어항구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2곳의 계류장이 독점 사용 권한 없이 운영되는 무등록상태임을 지방해양수산청이 확인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기초지방단체(지정권자)로부터 지방어항 2곳의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각 사업부지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어항개발사업을 운영 중이며, 같은 법률은 어항구역에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요트계류업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임에도 무등록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지방어항에서 요트계류업을 하려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계속 영업을 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관계기관이 '무등록 영업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정대상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어항구역의 독점적 사용 권한을 놓고 신청인 회사와 관계기관 간 의견 대립이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관계기관이 신청인 회사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정을 고려,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언론사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면 그 결과를 후속보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건부 추후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과 △△에서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요트 마리나 사업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민간업체는 관계기관과 관련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요트 계류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자신들은 어항 구역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이를 인정하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 요트마리나 계류업체 관계자 :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사전에 비지정권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이 부딪혀서’]

이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은 법적으로 마리나 항만이 아닌 어항에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운영해 왔던 ○○항과 △△ ◇◇항 계류장 2곳은 무등록상태임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문서를 낸 적은 없었는데 이 업체는 저희가 갱신을 안내했는데도 안 해서 따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어요.’]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조건부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후속보도] ○○항 마리나업체 미등록 무혐의

본문내용: 올해 초, ○○항에서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요트 보관 계류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관계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체가 지난 2009년부터 요트 마리나업을 해오고 있는 ○○항입니다. 해당업체는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에서 보관 계류업 등록이 의무화된 2015년부터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자 □□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경찰에 무등록 업체로 고발했습니다.

해당업체가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항을 개발했던 기존 어촌어항법에 따라 선박 계류업을 계속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리나항만 조성법에 다른 법률에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해양경찰서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마리나항만 조성법에는 마리나업 ‘갱신 등록’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업체도 마리나허가를 취득한 뒤 일부 시설을 기부 채납하고 30년간 사용승낙을 받은 적법한 사업자라며, 당연히 계류업 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맞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청은 아직 해당업체가 선박 보관계류업을 할 법적 근거는 마리나항만



조성법밖에 없다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담당/□□지방해양수산청 : “갱신하지 않으면 무등록으로 봐서 다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해당업체는 또, 지난 6월에 ○○항에 선박 보관 계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항구역 사용 허가도 끝난 상태여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업체측은 어항구역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시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인 일부 시설 철거와 안전시설 보강을 놓고, 입장이 달라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업체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마리나 현장의 혼선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방법

-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가 종결된 후 피신청인에게 위 수사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신청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속보도한다.

추후보도 사례 02 2022경기조정90/91 각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조건부 추후보도)

신청인의 강제추행 혐의 보도와 관련, 심리 당시 무혐의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후보도 하되,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인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 씨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전지훈련에서는 미성년자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훈련장소 및 합숙장소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최종 종결되면 관련 내용을 추후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논의하길 원한다는 양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중재부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향후 결과에 따라 추후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개 매체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검찰 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무혐의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후보도)으로 종결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①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선수 영입, 사생활 침해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동료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XX일 ○○시와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A 선수는 20XX년부터 ○○시청 실업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XX년 X월 결혼하기 전까지 ○○시청 앞 숙소에서 동료 선수들과 함께 지냈다. 결혼 후에는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A 선수와 함께 숙소생활을 하던 후배 선수들은 'A 선수와 함께 지낸 시간이 곤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B 선수는 "A 선수가 숙소 바닥이나 침대에서 남자 후배 선수와 레슬링 훈련을 핑계로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며 "반항하려 하면 '가만히 있어! 후 후 심호흡해'라면서 강압적으로 신체를 유린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 선수의 행동을 문제로 삼으면 불이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 후배 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되레 A 선수는 '재는 우리랑 다르니까 조심해야겠다'며 후배 선수를 왕따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실제 △△일보 취재진이 A 선수와 후배 선수 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A 선수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선수는 "서로가 장난치면서 일어난 일로 다 같이 어울리는 상황이었고 저도 밑에 깔리기도 했다"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후략]**

② **[전략]** ○○시와 ○○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청 소속 수영팀은 지난 20XX년 X월 XX일부터 X월 XX일까지 □□□□고, 20XX년 XX월 XX일부터 XX월 XX일까지 ◇◇시청 등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당시 전지훈련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관련 추가 증언이 나오는 등 미투현상이 일고 있다. A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수 B 씨(전 □□□□고 소속)는 "훈련 중 휴식 시간에 A 씨가 물속에서 (신체)중요 부분을 여러 차례 만졌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훈련기간 내내 (A 씨의)성추행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B 씨는 지난 20XX년 당시 XX세로 미성년자였다. **[중략]**

A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선수들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선수가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A 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에 앞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성추행 추가 폭로와 관련 △△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①

보도제목: [추후보도] ○○시청 수영선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본문내용: 본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 ①에서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 씨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수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씨는 위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문 ②

보도제목: [추후보도] ○○시청 수영선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

본문내용: 본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 ②에서 “○○시청 소속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A 씨가 과거 전지훈련 도중 당시 미성년자였던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경찰청 수사결과, A 씨는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대상보도 ①과 관련,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문을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 피신청인은 우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조정대상보도 ①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다. 단,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은 위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일간신문 4면 우측하단에 추후보도문 ①을, 일간신문 7면 우측하단에 추후보도문 ②를 각각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문 ① 및 ②를 각각 게재하되,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동안은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각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추후보도문 ① 및 ②가 나오게 한다.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 ① 및 ②를 이어서 각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추후보도 사례 03 < 2022서울조정1807/1804 각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신청인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 보도와 관련, 무혐의 및 무죄판결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추후보도하되, 매체유형별로 피해구제보도문을 달리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전직 교도소장인 신청인이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유용을 한 의혹이 있으며,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킨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방송과 방송사 홈페이지, 언론사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송이 아닌 방송사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추후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사 홈페이지에 모두 추후보도를 하되, 매체별 특성에 맞춰 보도문을 따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중략]** 최근에 부장검사 출신인 교도소장, 그리고 부소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해임된 것으로 ○○○○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략]**

부장 검사를 지낸 △ 모 전 소장과 □ 모 전 부소장은 2011년부터 8년 가까이 ◇◇교도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중략]**

법무부는 이들이 물러난 직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중략]**

또 교도소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전 소장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략]**

② 어제 저희는 아시아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 교도소의 전 소장과 부소장 비리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중략]**

법무부는 지난해 4월 ◇◇ 교도소에 대한 정기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과 부소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중략]**

법무부는 검사들까지 보내 조사를 했고,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소장과 부소장이 해임됐고, 법무부는 2달 전 이들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③ **[전략]** △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중략]**

또 교도소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전 소장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략]**

④ **[전략]** 부장검사 출신인 △ 전 소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한 종교 관련 연구소가 외국책을 번역해 냈는데, 교도소 직원에게 번역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수당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교도소 업무 시간에 번역을 하고 1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전 소장이 직원 1명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고 또 다른 직원 1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①

보도제목: ◇◇교도소 △ 전 소장 ‘비리’ 무혐의·무죄 추후보도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20XX년 △☆☆ 전 ◇◇교도소장이 관사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특별감찰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 전 소장은 수사가 이루어진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문 ②

보도제목: [추후보도] ◇◇교도소 △ 전 소장 ‘비리’ 해임 관련 무혐의 및 무죄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20XX년 △☆☆ 전 ◇◇교도소장이 관사 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XX년 X월 X일 △ 전 소장의 업무상횡령, 교도소 직원 채용 및 전직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20XX년 XX월 X일 업무상배임, 교도소 직원 채용, 특별승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중 추후보도문 ①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추후보도문 ① 내용을 진행자의 멘트로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한다.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 각 본문 하단에 추후보도문 ②를 각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 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방송사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추후보도 사례 04 < 2022서울조정1804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신청인의 제자 성추행 및 인건비 유용 혐의 보도와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후 항고 기각 등으로 무혐의가 확정돼 추후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 A 교수가 제자 인건비 유용으로 인한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제자 성추행,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에 대해서도 제자 성추행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하여는 항고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에 대한 각종 혐의가 항고 기각 또는 각하로 무혐의가 확정된 만큼 추후보도를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관련 수사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양측이 문안을 협의해 추후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최초 경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 추후보도청구를 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 언론사가 항고로 인한 수사가 계속 중임을 항변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짐. 이후 검찰의 항고 기각 및 각하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자 신청인은 다시 추후보도를 신청했고,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를 수용해 피해가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대학원생 제자를 지속해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 △△ A 교수'가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서는 지난 X월 말 A 교수의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XX년 X월부터 지난 X월까지 제자 명의로 학과 통장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식비 등의 공금 명목으로 돌려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제자들이 인건비를 모두 받는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입니다.

○○대 차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찰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A 교수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X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성립사항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제자 성추행’ 및 ‘연구비 유용’ 의혹 ○○대 △△ 교수 모두 무혐의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 △△ 교수가 인건비 유용과 관련한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도 고발을 당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수사 결과, A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인건비 유용과 관련한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고, 이후 항고 각하 및 기각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A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방송사닷컴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01 2022대전조정1/2 각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400만 원)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해당 발언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방송해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한 캠핑장 측의 자제 요청에도 소방관들이 캠핑장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는 등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하면서, 캠핑장 관계자인 신청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 후 방송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취재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자신의 음성을 뉴스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통화 내용을 방송했으며, 음성을 변조하긴 하였으나 사건의 개요, 통화자의 억양과 어조 등을 고려하면 직장 동료들이 신청인이 제보자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보도 이후 담당업무 변경 등 고충이 커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신청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음성 변조 조치를 한 후 방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타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해 공개하는 경우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양 측이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금 400만 원 지급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전략]** ○○의 한 캠핑장에서 평일 대낮부터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판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캠핑장 측의 주의에도 개의치 않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 알고 봤더니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5인 이상, 또 8인 이상 집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고요 통고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술이 떡이 돼가지고 사무실로 왔어요. 그러고서 이 XX (방역) 서류 내놓으라 그런 거지.”]

[후략]

② 힐링캠프를 명목으로 캠핑장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소방관들,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한 캠핑장 측의 자제 요청에도, 경찰의 출동에도, 소란스러운 술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밤 10시 반쯤) 소방관들이 난동을 부린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더니, 조용해질 테니까 기다려 보시라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도 똑같았어요. 11시 40분쯤에 (전화를) 다시 한 거죠, 데려가셔라 … ”] **[중략]**

[캠핑장 관계자(음성변조) : “새벽 1시 40분까지 떠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내버려 두고 들어왔죠.”] **[후략]**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 언론사는 20XX년 X월 XX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02 2022서울조정267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50만 원)

언론사가 신청인이 출연한 모 유튜브 채널 영상 이미지를 동의 없이 보도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실외기가 4개 있는 자취방'을 소개한 유튜브 채널 영상 속 이미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모습이 담긴 해당 유튜브 영상 이미지를 게재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유튜브 채널 출연에 승낙한 것일 뿐 해당 영상이 기사화되는 것에 동의한바 없으며, 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조차 하지 않아 주위에서 본인임을 알아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악플 및 부정적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조정대상보도 삭제와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이미지는 이미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됐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 사용했으며, 추후 신청인의 초상을 블러(blur) 처리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유튜브 영상 출연자의 초상을 보도 사진으로 쓰기 위해서는 출연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처음부터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신청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될 필요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구 신축 오피스텔 1억 9천 전셋집 스펙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에는 '실외기가 4개 있는 자취방'이 소개됐다.

거주자는 실외기가 4개 있는 테라스를 소개하며 “이 테라스에 반해 계약했는데 추워서 겨울엔 못 나온다”고 말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름에 덥고 미관상 안 예쁘긴 한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면서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땐 테라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소개했다. [중략] 거주자는 “여기서 테라스 파티하면 너무 좋다”면서 “방도 아니고 테라스도 아닌 느낌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벽을 설치할까 했는데 저는 2년 뒤 떠날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살고 있다”면서 “우드폼 블라인드로 밖을 가리고 있다. 유리가 없고 방충망만 있다. 유리로 막아놓으면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초상이 공개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03 2022서울조정567·568·56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사립대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관련 보도에서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대학교가 소속 교수 A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직절차중지요구”가 뒤늦게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고, A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의 비리 의혹 10건에 대해 공익 제보했으나 9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단지 1건만 담당자 주의조치 및 기관경고로 마무리됐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대학 측이 본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기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직 절차 중지 요구 결정이 있었으며, 공문의 통지도 바로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제보한 비리는 10건이 훨씬 넘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임원 취임 승인취소 등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언론사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해 교수이자 공익제보자인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됐다고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내용은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취재원 진술내용, 수사기관 자료, 교수 및 교직원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도한 만큼 신청인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건기록,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및 처리결과 통지 여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인정되고, 보도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대학교가 지난 X월 XX일 의결을 이미 마친 “A 교수 면직의결”에 대해, 28일 뒤늦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직절차증지요구”가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혹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오히려 허위이력 등 의혹이 있는 공익제보자를 권익위가 이처럼 보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대는 A 교수의 임용 당시 허위이력이 의심돼, A 교수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A 교수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증대서류 미제출’로 의결을 통해 면직 처분된 사건이다. 의결을 마친 날이 X월 XX일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면직절차증지 요구가 XX일 뒤늦게 접수돼, 학교 측이 이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것. **[중략]**

△△△△△는 1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해명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중략]**

그러나 결국 A 교수가 제기한 ○○대학교 관련 의혹 10건 중 9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단지 1건만 담당자 주의조치 및 기관경고로 마무리됐을 뿐이다. **[중략]**

이명을 요구한 모 교수는 “A 교수는 교수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언론에 우리 대학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학교의 명예실추가 심각하다.”며 “교직원 70%에 해당하는 300여 명의 교직원들은 A 교수 등 교수노조의 주장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대학고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대다수 구성원의 권익이 아닌 극소수 개인의 권익만 옹호하는 권익위의 이같은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대 “A교수 이미 면직됐는데” ... 국민권익위, 뒤늦게 면직절차증지 ‘논란’> 관련

본문내용: 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20XX년 X월 XX일 이미 의결을 마친 A 교수 면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가 28일 뒤늦게 면직절차증지를 요구했으며, A 교수가 교육부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는 A 교수 면직에 대해 ○○대학교의 이사회 의결 전인 20XX년 2월 25일 면직절차증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관한 공문이 당일 ○○대학교에 전달되었으며, A 교수가 제기한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전체기사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손해배상 사례 04 2022경기조정149·150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손해배상 1,000만 원)

언론사가 명백히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신청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보도 열람차단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캠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여성 직원이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캠프 내에서 수시로 들었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피해 대상으로 지목된 신청인의 얼굴이 공개된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선거 캠프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피해를 암시하는 말도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 언론사는 캠프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한 후보자 참석 행사 사진에 대해 신청인이 후보자와 데이트하는 것 같은 사진이라고 설명하며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양 측이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 성추행 사건」 △△△ 前□□□□ 캠프」 관련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 캠프의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는 성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여론에 노출된 사진 역시 ◇◇◇◇으로서 ○○○가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용 사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상단에 고정하여 게재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정정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금) 09:00까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을 완전히 차단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10,000,000원을 지급하되, 20XX년 X월 X일(목)까지 5,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20XX년 XX월 X일(금)까지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제5장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1 2022서울조정1540·154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노동조합)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알림보도)

노동조합의 농성장 음주 논란 보도와 관련, 언론사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를 조건으로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고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물류센터 본사 사옥을 점거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농성장에 돛자리를 깔고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노동조합들은 소속 조합원들이 농성장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음에도 '야만(野蠻)'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함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회사 건물 내부에서 술판을 벌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들을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라고 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켰다며 조정대상보도(포털사이트 전재 기사 포함)를 삭제하고, 사과를 포함한 정정보도와 함께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정식 절차 없이 진행된 농성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보도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청인이 향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피신청인 언론사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사를 삭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 삭제와 함께 해당 경위를 알리는 취지로 별도 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 차단과 보도 삭제 경위를 '알림보도' 형식으로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6개 매체 보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과 법률관계에 기초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3개 매체 관련 조정은 각 조정성립(정정보도), 2개 매체는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열람차단, 이 가운데 1개 매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해 법원에 자동으로 소(所)가 제기됨), 1개 매체에 대해서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는 ○○ 본사를 점거한 △△△△노조 ○○물류센터 지회 조합원들이 농성장에 돛자리를 깔고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정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기사수첩> 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알림보도문의 제목을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림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2****2022서울조정2094·2095·2096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독지가의 기부 동기가 잘못 기재된 보도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보도와 관련, 사회공헌 보도에서는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50대 독지가가 한 대학교에 전 재산 30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부처를 결정하는 데에는 해당 대학교 출신인 지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중 부동산 임대수익이 장학금으로 쓰이길 원해 기부를 결정하였을 뿐 해당 대학교 출신 지인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해당 대학교 측이 언론에 임의 배포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학교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하였음을 강조하며,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할 의사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회공헌 보도에서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는 후 현재 신청인과 기부처 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합의 해제가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0개 매체 보도에 대하여 위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3개 매체는 각 조정성립(열람차단, 열람차단 및 반론보도), 17개 매체는 각 취하(열람차단, 열람차단 및 반론보도)로 사건이 종결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3** 2022서울조정1778/1779 각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 피해자인 신청인의 보도 거부 의사를 존중해 조정대상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채널 등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모두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가게 단골손님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가해자들을 모욕죄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하면서, 가게 내부 모습과 신청인의 모습(윤곽)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방송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에 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건임을 고려해 취재기자에게 방송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 ①을 방송했고, 이후 취재기자와 재보도 중단에 합의했음에도 조정대상보도 ② 및 ③을 후속으로 보도해 형사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등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대상보도(포털사이트 전재 보도 포함)와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영상 삭제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5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성추행 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추가 취재를 거쳐 보도했으나, 형사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들을 열람차단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들과 함께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관련 영상들도 모두 열람차단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①, ② 및 ③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20XX. X. XX.(월) 정오까지 조정대상보도들을 삭제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들을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조정대상기사가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 피신청인은 20XX. X. XX.(월) 정오까지 유튜브 계정, 네이버TV 계정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특정 URL의 조정대상보도들을 삭제토록 요청한다. (피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인 경우에는 삭제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4** 2022서울조정524·477, 2022서울조정517·518(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수정)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신상정보 노출 등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수정하고, 유튜브 채널 및 IPTV로 송출되는 다시보기 영상에도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조명하면서, 대통령 후보자의 특정 부처 폐지 공약에 대한 시민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취재기자가 자신의 소속이나 방송 프로그램, 취재 목적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동의 없이 신청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방송에 공개해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초상 등 신상이 노출 부분의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삭제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서 당시 쟁점화 된 후보자 공약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이 먼저 본인의 성명, 나이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재기자는 방송사 로고가 크게 달린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했고, 프로그램 방송 관련 안내 역시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등을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취재 및 보도 경위, 인터넷과 SNS 상에서의 피해 확산 방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신청인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정대상보도에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를 하고 신청인의 실명과 나이가 노출된 부분도 수정하되, 유튜브 채널과 IPTV를 통해 송출되는 다시보기 영상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은 ‘□□□□부 폐지론’과 온라인상에서의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 반발)’를 통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을 집중 취재했다. (중략)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 폐지’ 공약은 어떻게 봐야 할까? 20대 남성들은 □□□□□ 폐지 공약에 열광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실제로 ◇◇◇ 폐지 공약 1주일 후, 20대 남성의 당시 ◇◇◇ 후보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했다. △△△이 만난 20대 남성들은 ‘□□□□는 여성 우대 정책으로 오히려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20대 여성들은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 대신, □□□□로 엉뚱한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 폐지 공약을 비판했다. ◇◇◇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싼 20대 남녀의 입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범 22년 만에 부처 존폐론에 휩싸인 □□□□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인터뷰 장면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기사 수정사항

- 방송사 홈페이지에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인터뷰 부분(보도의 31:27~ 31:37에 해당하는 분량)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하며, 신청인의 실명 및 나이가 노출된 부분을 “20대 남성”으로 수정한다.
-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및 IPTV를 통해 다시보기로 송출되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영상에도 위의 사항을 반영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5** 2022서울조정715/716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공공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보도의 주된 취지에서 벗어나는 앵커 발언 일부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자체의 특혜 수의계약 의혹에 관해 보도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입찰 대신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특혜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앵커의 발언을 방송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공공단체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가격경쟁력 및 신속한 시약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특정업체가 타 의료기기·의약품 유통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임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부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도해 신청인 공공단체의 민간 신뢰와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의 주된 취지는 언론이 산하기관의 특혜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앵커의 '수의계약' 발언은 지엽말단적인 것에 해당하며, 신청인 주장은 업체 대표와 신청인 측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미 보도에 반영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앵커의 일부 멘트를 삭제함이 적절해 보임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광역시 산하 ‘△△△△△△’이 영세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코로나 진단시약을 수의 계약으로, 1년에 24억 원 어치나 납품받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관련 의혹 제기에도 감사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략)

A사 대표는 “운이 좋았다”고 했고

[A사 대표 :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거지. 운이 진짜 좋은 거죠”]

○○◇◇◇ 측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 △△△△△△ 관계자 : “행정 절차상 미흡하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런 일(특혜)은 없는 것으로...”]

의심스런 정황은 또 있습니다.

작년 5월 한 언론이 A사 특혜의혹을 보도하려 하자, 이□□ ○○시장은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할테니 보도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이 차단된 앵커 멘트는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본문 중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 입찰 대신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 계약’을 맺었다면 특혜 의심을 피하긴 어렵겠죠.’ 부분을 삭제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 입찰 대신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 계약’을 맺었다면 특혜 의심을 피하긴 어렵겠죠.’ 멘트 부분을 삭제하여 편집한 영상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6****2022경기조정105/106 각 정정청구****2022경기조정107/108 각 정정청구****신청인 유형** 개인(기초자치단체의원)**피신청인 매체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신청인을 풍자한 만평(漫評)을 보도내용에서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장애인 부모들과 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는 자리에서 A 시의원이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날 새벽 시간에는 한 여인이 목을 매 자살하는 노랫말이 담긴 음원을 문자로 보내 자살을 종용하는 듯한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언론사는 이 보도를 접한 A 시의원이 다른 장애아동의 어머니 C 씨와 취재기자에게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후속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고, 다만 지지자라고 생각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개선 의지가 담긴 노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C 씨와 취재기자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제보자 주장만을 편파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칼럼이며, 신청인이 B 씨 등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참고해 관련 상황을 회화적인 풍자만화로 묘사한 것이고, 공적인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도했기에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제보자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기사 본문 가운데 단정적 표현 등이 언급된 만평(漫評)을 열람차단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A 시의원은 심야에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에 따르면 A 시의원을 처음 본 것은 금년 4월 초순이며 A 시의원이 장애인 부모들과 K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건으로 만났단다. **(중략)**

그래서 B 씨는 “사과하러 온 사람이 태도가 그게 뭐냐?”고 하자 A 시의원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당신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그런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K사회복지법인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에서 B 씨가 화를 많이 냈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난 XX일 새벽 12시 30분께 ‘○○○○○’라는 음원을 B 씨에게 보냈다. ○○○○○는 ‘남군이 사랑방에서 기생첩과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건넌방에 가 목을 매어 자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그런데 이미 성년이 된 첫 아이는 1세의 지능밖에 되지 않는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 **(중략)**

이런 아픔을 안고 사는 B씨는 “A 시의원이 보낸 음원을 들어보면 자살해서 빨리 죽으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불가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A 시의원은 “목맨다는 문구에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개선 의미를 담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벽시간에 문자를 보낸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 편하게 생각해 오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A 시의원의 이런 행동을 두고 B 씨는 ‘자살을 종용하는 협박’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후략)**

② **(전략)** 칼럼이 나가자, A 시의원은 또 다른 장애아동의 어머니 C 씨에게 칼럼을 요약한 △△신문 만평을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C 씨에게 전화한 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카톡 보셨죠? 참고하시라고... 그냥 저는 놔두려고요”라는 말을 남겼다. A 시의원은 왜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C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해서 참고하라고 했을까? 또 그냥 놔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대목에서 C 씨는 “A 시의원이 보내온 문자와 전화는 협박의 뉘앙스가 다분하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A 시의원은 필자에게도 X월 XX일 밤 10시 21분께 문자를 통해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필자는 “뉘앙스만 남기시는 것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달라”고 답을 했으나 이후 묵묵부답이다. 기자에게도 이런 식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힘없는 어머니들에게 한 행동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이후 A 시의원은 사과문을 작성했다. 사과문에는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성희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를 보내기 3일전인 X월 XX일 새벽 1시 20분께 B 씨에게 보냈던 문자에는 “전 그만 좋아하시고 만인을 좋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아침이 되어서야 문자를 확인한 B 씨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 그만 좋아하시고?”라며 “제가 의원님을 좋아 하던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A 시의원은 “좋은 하루되시고요. 비가 오네요.^^”라며 알쏭달쏭한 답글을 남겼다. 이처럼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글을 남기면서 “성희롱의 의사는 없었다”는 그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이 차단된 만평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금) 09:00까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의 만평(신청인에 해당하는 그림)의 열람을 차단한다.
-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의 포털사이트에서도 위 만평 보도가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7 2022서울조정1755·1756·1757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모 상담센터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보도와 관련, 방송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서 내담자인 신청인의 음성 및 초상 등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욕설 상담기법을 사용하는 B 상담센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포함된 내담자들의 상담 장면을 공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내담자들 간 자료공유 목적에서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상담 진행 방식과 목적 등에 대한 이해 없이 마치 상담자와 내담자들이 욕설만을 주고받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가공된 영상을 공개해 신청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B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담자가 센터에서 욕설을 섞어 상담한 적이 많았다는 제보를 하여 관련 내용을 취재하였고,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B 상담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영상(클릭 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으로 이동됨)을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 후 방송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내담자로서 보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도에 공개된 유튜브 영상 중 신청인 등장 부분을 일부 열람차단하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전재한 보도 영상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음성 및 초상이 포함된 부분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음성 및 초상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 자료화면 부분을 삭제한다.
- 시리즈온, 티빙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8

2022서울조정2221·2222/2223·2224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피신청인 유감표명, 일부 열람차단)

언론사가 신청인들 동의 없이 취재, 녹화한 영상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신청인들의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된 부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망했던 음악가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게 된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음악가의 부친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포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관계자인 신청인들이 부친과 상담하고 방문에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상담 후 부친과 함께 아들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상담과 방문 동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취재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청인들 몰래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내 평온히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의 삭제, 정정보도와 함께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사회로의 환원 방안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공익적·공공적 목적에서 해당 방송을 보도했고,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충분히 흐림 처리를 했으며, 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기에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정대상 보도 취재 과정에서 신청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취재·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촬영한 문제를 지적하며, 신청인들에 대한 유감표명 의사를 조정합의서에 기재하는 것과 영상 중 신청인들의 모습과 음성이 노출된 장면을 일부 열람차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전제한 보도 영상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들의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된 부분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피신청인 유감표명

- 피신청인은 20XX. XX. XX.(금) 신청인들에게 취재·방송에 대해 사전에 허락 및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일부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 XX. XX.(금) 까지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들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고, 네이버(시리즈온), 웨이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9** 2022서울조정2305, 2306 각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범죄혐의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 건물 전경을 동의 없이 촬영·공개한 보도와 관련,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서 건물 노출 부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범죄혐의를 알리는 보도에서 피의자들이 위조지폐 제작소로 운영했던 가게라고 지칭하며 신청인 소유의 상가 전경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자신 소유의 상가 전경과 내부 구조를 무단 촬영해 방송에 공개했고, 보도 이후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방송사 홈페이지 및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노출된 부분의 삭제와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취지인바,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신청인 소유의 상가 건물이 노출된 장면은 열람차단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방송사 홈페이지 및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 소유 건물이 노출된 부분을 모두 삭제해 피해구제 효과를 제고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소유 건물이 노출된 부분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방송사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의 동영상에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동영상에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한다.

제6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기 타 사례 01 < 2022서울조정111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회사 분식회계 의혹 보도와 관련, 소액주주인 신청인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을 갖는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만간 개최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한 제약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제약회사 관련 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조정대상보도 당일 주가가 하락해 주주로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실명이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적시되지 않았고, 기사의 주된 취지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가능성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을 갖는 자는 제약회사 또는 그 계열사나 각 대표자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이 보도에서 특정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사 신청인과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보도는 몇 년 간 금융당국의 감리가 계속된 사실을 반영해 향후 조치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전망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며, 피신청인 언론사에게 제약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당일 주가 등락이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회계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가 다음 주에 시작된다. **(중략)**

XX일 △△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금감원의 ○○○○ 3사(○○○○, ○○○○□□□□, ○○○○◇◇)에 대한 20XX~20XX년 감리(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XX월 X일부터 지난 X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 감리와 감리위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 오는 XX일 ○○○○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략)** 금융권에서는 증선위가 대선 전에 ○○○○에 대한 제재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시총 XX위인 ○○○○의 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 타 사례 02 2022서울조정279·280·281, 282·283·284(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기각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당사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뉴스 제보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보 의뢰받았음에도 2주가 지나도록 관련 보도가 나가지 않았고,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자 다음 날 한 인터넷 매체가 아무런 취재 없이 제보 내용만을 반영해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제보대행사 대표는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조롱하듯 반말로 쓴 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제보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제보자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최종 환불해 주었고, 환불 금액 수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이지 제보자에게 무조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조롱하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신청인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중재부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등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방송에서 제보대행사 홈페이지의 홍보 문구 부분만 공개된 점, 보도내용에 홈페이지 전체 화면이나 상호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및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도에서 지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인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가 제공(Inlink)한 기사에 대하여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개별적 연관성 부정을 이유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짐



조정대상보도

최근 기자들에게 특정 형식을 갖춘 이메일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런 제보는 누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요? 이 제보 메일에는 제보자 말고도 업체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습니다. **(중략)**

과거 이곳에 제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의뢰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제보자는 임대인과 전세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대행사에 30만 원을 주고 제보를 의뢰했습니다.

(중략)

결제 하루 만에 기자들 메일로 제보 내용은 일괄 전송됐지만, 일주일도 지나도 기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행사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뉴스 제보대행사 직원 : 그쪽(지상파)에서는 좀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는 아예 제보팀이 따로 있어서...]

2주 넘게 기다리던 제보자는 환불해 주지 않으면 대행사 측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기사가 한 인터넷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게 전화 한 통도 없이 제보 내용만 보고 쓴 기사였습니다.

당장 제보자가 언론사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론사 측이 대행사 측에 연락해 환불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언론사 대표 : 제보한 사람(제보대행사 측)한테 전화해서 이걸 돌려주라고 할게요. 돈만 돌려주면 되겠네.]

하지만 제보대행사 측은 돈을 돌려줄 수 없고, 기사도 나갔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제보대행사 대표는 오히려 조롱하듯 반말로 쓴 메일을 보냅니다.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 글도 의심스럽습니다. **(중략)**

뉴스 제보대행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제보자에게 사과하고 의뢰비 30만 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기 타 사례 03 2022서울조정815·816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판결문 내용을 압축, 요약한 기사 표현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은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의료기기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통한 불법 대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350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들인 의료기기 전문업체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면서, 검찰이 이들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반쪽·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신청인 회사는 조정대상보도에 언급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고한 파기 환송판결의 주된 내용은 사무장병원인지 여부에 대해 원심(고등법원)이 추가적으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회사가 추진하던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이 좌초될 위기에 몰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과 본문 중 ‘대법원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 판결’, ‘대법원이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등의 표현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을 압축·강조한 것으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며, 기사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 역시 적시되어 있어 조정대상보도를 접하는 독자들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론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정대상보도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서 그 보도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이

사회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언론사로서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대법원 판결 등을 발췌 게재 한바 보도의 적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며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의료기기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통해 불법 대출한 자금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350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온 의료기기 전문업체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불법 대출’ 혐의만 기소하고,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반쪽·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사건은 수년 전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것을 경찰이 따로 인지해 약 2년간 재수사한 끝에 결론을 뒤집고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반대 근거로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보다 떨어져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 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반대 사례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략)**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서 “ㄴ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은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혐의에 대한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이후 결정된 일로, 검찰의 ‘부실 기소’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C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의무이행 소송에서 “C 씨는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A사가 C씨를 통해 ㄴ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을 고용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는 경우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인 ○○○○ 자리에 사람을 보낸 A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A사의 회장 등과 C 씨의 관계, 의료인으로서의 C 씨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한 의료인 고용이나 명의대여와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후략)**



기 타 사례 04 2022서울조정1750·1751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기각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도과되었을 때 비로소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절에서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30대인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사찰의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당시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찰 주지 스님의 배우자이자 주지 스님의 극단적 선택 후 실질적으로 사찰과 사찰의 신도들을 보살피고 있는 자로서, 보도된 상해치사 범행 당시 신도들은 아들을 때리는 어머니를 수차례 말리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응급처치를 한 점이 인정되어 경찰수사에서 상해치사방조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음에도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추측성 내용과 관련자의 일방적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해 신청인의 사회적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청인을 비난하는 일반 대중들의 의견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추후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신청인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목격자들에게 '범행을 방조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린 사실에 관한 것이고, 사망한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를 접수한 후 경찰과 주지 스님, 신도 등 사찰관계자에 대한 추가 취재를 거쳐 확인된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했으며, 가사 보도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며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취지가 신도들이 범행을 말리지 않아 방조한 혐의가 의심되고,

나아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절이 수상하여 범행에 개입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그 법적 성격이 잠정적 처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종국적 수사종결처분에 해당한다며 추후보도 게재를 요청했다.

중재부는 사건기록,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인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및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경찰로부터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연장 가능)에 언제든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초과되었을 때 비로소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도들의 상해치사방조혐의에 대해 20XX년 6월 30일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지만 조정신청은 8월 30일에 접수된바 아직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초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조정대상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위 상해치사 범행을 보도한 2개 매체를 상대로 추후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다른 2개 매체를 상대로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재부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이 초과되지 않아 추후보도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 기각 결정을 내렸음

조정대상보도

① ○○에 있는 한 절에서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30대인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주지 스님을 비롯해 3명이 이런 가혹한 폭행을 목격했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가해자인 부인의 행동과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버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숨진 아들 아버지 :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

신도 상당수가 합숙생활을 하는 이 절은 등기부등본에는 영풍하게도 ‘목욕탕’과 ‘사무실’로 등록돼 있습니다. 주지 스님과 신도 2명은 당시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략)**

② **(전략)** 권 씨는 아내가 아들을 3시간 반이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폭행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중략)**



이렇게 잔혹한 폭행을 정말 64살의 어머니가, 그것도 혼자서 저질렀다는 것일까. 절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의 결론은 놀랍게도 ‘그렇다’였습니다. **(중략)**

오후 7시 11분,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이후 50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중략)**

권 씨는 아내의 행동에 사찰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중략)**

3시간 반 동안 폭행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당시 CCTV 기록을 보면, 목격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사찰 관계자이기도 한 여성 신도와 남성 신도, 그리고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경찰에서 “훈계를 하는 줄 알고는 산에 나갔고, 뒷일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맞았는데, 다른 신도들 역시 “아들이 자주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체벌한다고 생각해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에게 범행을 방조한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후략)**

기 타 사례 05 2022서울조정2009·2010, 2011·2012/2013·2014**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라디오,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보도와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을 갖는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기사의 '피묻은 빵'이라는 표현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빵 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피묻은 빵, 죽음으로 반죽한 빵, 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후 관련 제품 불매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피신청인 언론사가 보도에서 '피 묻은 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불매운동을 언급해 가맹계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핵심은 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내용으로, 보도에서 신청인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명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그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중 한 사람에 불과하여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청인이 보도에서 문제 삼은 부분 즉 '피 묻은 빵'이라는 표현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에 해당하여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어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자 출석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피묻은 빵, 죽음으로 반죽한 빵. ○○○ 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스물세 살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후 관련 제품 불매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회사 측 대응을 보면 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동료들은 사고 다음 날도 사람이 끼었던 그 기계 옆에서 허술한 근무환경 그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중략)

○○○ 그룹 계열사인 △△△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중략)

사고 8일 전에도 □□노총은 △△△ 공장에서 손목이 끼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노동부는 그동안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결정적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SNS 상에서 피묻은 빵 안먹겠다.. 규탄 성명과 불매운동까지 확장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중략)

너무나 안타까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일하는 직장에서 죽음을 맞는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 타 사례 06

2022서울조정1455·1456·1457/1458·1459·1460,
2022서울조정1461·1462·1463 (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유튜브채널

처리결과 각하

언론조정신청서, 언론사 측 답변서 등을 통해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된 사실이 확인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회사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인이 남긴 기록, 유가족과 여러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회사의 입장을 취재한 결과 이 죽음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죽음이라고 보인다면 ‘과로자살’로 표현하고, 동료들은 센터장 취임 이후 도입한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센터장인 신청인은 본인이 도입한 업무시스템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세져 야근이 잦아지는 등 과로에 시달린 부하 직원이 자살에 이르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고인의 산재판정을 담당했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및 회사 조직문화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과로자살’ 등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공익적 보도로서 회사 조직문화개선위원회 보고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종 성명서, 직장동료와 고인의 유가족 인터뷰 등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 만큼 해당 보도는 진실성과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사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앞서 20XX년 2월 4일 글을 게재하면서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4월 2일이 아니라 늦어도 2월 4일에는 조정대상보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돼, 이 사건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확실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신청은 20XX년 6월



30일자로 접수되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에 피신청인 언론사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을 같은 해 4월 2일로 기재하였으나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보도 직후부터 2월 7일자 산재판정 이전에 보도에 대해 인지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2월 4일자에 게재한 글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4월 2일이 아닌 2월 4일 또는 2월 7일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접수되어 제척기간을 초과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① ○○자동차 △△ 연구소는 ○○차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1년 4개월 전, 이 연구소 □□□ 센터의 한 팀장급 직원이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는 고인이 남긴 기록, 유가족과 여러 동료의 증언, 그리고 회사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죽음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죽음이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과로 자살. **(중략)**

☆☆ □□□ 작업에 참여했던 이▽▽ 책임연구원. 그는 신차 발표 8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살과 7살 남매를 둔 촉망받던 ◎◎◎◎. 팀장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도, 휴일에도 일했다고 합니다. **(중략)**

이 씨는 정신과에서 조울증, 심한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중략)**

복직을 한 달 앞둔 2020년 9월 7일,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② □□□ 센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는 그의 기록과 동료의 증언,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을 한 가지 원인으로 단순화할 순 없지만 동료들은 승차독식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중략)**

20XX년. <<<< <<<<<<를 □□□한 이 모 씨가 ○○차의 □□□ 총책임자, 센터장에 취임한 해입니다. 그가 도입한 쏠쏘쏠, 데이터에 기반한 □□□ 시스템은 차량 개발 기한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는 훨씬 세졌다고 합니다. **(중략)**

함께 협업을 해도, 공은 단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 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리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략)**

故 이▽▽ 씨도 그런 스트레스를 메모에 남겼습니다.

“전무님(센터장)한테 보이는 것, 위대한 ◎◎◎◎.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 주는 말들 조심하자.” 제작년 1월 센터장과 면담한 직후에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故 이▽▽ 씨 아내 : “리더십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책을 더 읽고, 밤새워서 연습을 해라.” 센터장의 말대로 이▽▽ 씨는 그날도 회사에서 밤을 새우다, 새벽에 이상증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서른아홉 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 타 사례 07 2022서울조정540, 541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알림보도, 일부 열람차단)

부고(訃告) 기사와 관련, 유족이 문제 삼은 고인의 경력 일부를 열람차단하고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사립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인의 부고 기사를 내보내면서, 고인이 1900년 A 대학교 임사이사가 된 뒤 대학 설립자에게서 학교를 인수했다는 등의 경력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고인의 유족인 신청인은 학교법인 A 학원의 명칭은 설립자인 고인이 19△△년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처음 사용한 것임에도 1900년부터 A라는 명칭을 사용한 대학교가 설립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이후 인터넷 기사를 한 차례 수정했고, 보도 분량 및 그 표현방식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터넷 기사 본문 중 신청인이 문제 삼는 부분은 열람차단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A 학원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인지 여부를 두고 고인과 A 학원 등 사이에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간신문에 정정보도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신청취지가 부고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법인격)과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대학(법인의 목적사업)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살펴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문에 기초한 알림보도 게재 등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는 인터넷 기사 본문 중 신청인이 문제 삼는 표현 일부는 열람차단하고, 판결문의 문구를 인용해 인터넷신문에 알림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개 매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하여 위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일부 열람차단 및 알림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음



조정대상보도

(전략) A대 총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XX세. 강원 강릉에서 태어난 고인은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 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림보도] 「[부고] A대 총장 지낸 김□□ 前의원」 관련

본문내용: 본지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고인은 19△△년 A 대학교를 설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일보>☆☆☆으로> 섹션에 알림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림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일보>☆☆☆으로> 섹션 기사목록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를 삭제한다.

기 타 사례 08 2022서울조정858/859/860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알림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조정대상보도들 가운데 게시물의 조회수 및 댓글수가 많은 일부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만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문화재 수리업체가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을 시멘트로 뿔질식으로 보수하여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수리업체는 무려 11년간 해당 지역의 문화재의 수리를 독점해왔는데 업체 전·현직 대표 상당수가 퇴직 공무원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수리업체’로 언급된 자는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보존을 위해 상시적 예방관리 차원의 경미한 수리만을 담당하는 ‘문화재돌봄단체’에 해당하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업무를 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 전혀 무관함에도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들이 문화재수리업체에 불신을 갖는 등 신청인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와 피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TV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의 열람차단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법과 규정을 전달할 때는 분명히 ‘돌봄사업’임을 밝혔고, ‘수리업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정보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문화재수리법상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으며,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기에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각 조정대상보도가 중앙·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방송됐고 방송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TV 채널에 중복 게재되어 있는바, 모든 보도(또는 보도 영상) 하단에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의 알림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게재하되,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조회수 및 댓글수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대상보도에 한하여 원보도 하단에 알림보도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자치단체마다 매년 수억 원씩 들여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을 시멘트로 땀질식으로 보수해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4백 년의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20XX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 △△서원입니다. 20XX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수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벽체와 기단, 처마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덧씌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수리 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략)**

② **(전략)** 그러나 부실 보수공사의 이면에 자치단체와 퇴직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시멘트로 땀질 보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 △△서원'입니다.

수리를 맡은 업체는 앞서 20XX년에도 서원 □□□ 기단을 수리하면서 시멘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시 조치는 하나 마나 했다고 업체 관계자는 실토합니다. **(중략)**

해당 업체를 취재해 봤더니 설립 당시 대표부터 현 대표까지 4명 가운데 3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고 10년 넘게 문화재 돌봄사업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지침을 보면, 문화재 훼손 등 지침을 위반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수행 단체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략)**

③ ○○의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을 시멘트로 땀질식 보수하면서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리 업체는 무려 11년간 해당 지역의 문화재 수리를 독점해 왔는데, 업체 전·현직 대표 상당수가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중략)**

서원 수리가 이뤄진 건 20XX년부터 해마다 약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리 업체는 시멘트 사용을 부인했지만, 업체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시멘트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중략)**

④ ◇◇◇ 보도 이후 ○○시가 긴급 조사한 결과 세계문화유산 ○○ △△서원의 시멘트 땀질 보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문화재청의 허술한 사업추진 지침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침을 보면, 관리 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점검만 할 뿐, 현장 실사나 감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리 업체가 문제를 파악해 보고하지 않는 이상 관리 당국이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수리자격이 없어도 경험만 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게 했고, 보고를 누락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후략)**

⑤ **(전략)** 시멘트로 땀질 보수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서원.

취재 당시, 시멘트 사용을 전면 부인했던 수리 업체는 ◇◇◇ 보도 이후 ○○시의 조사가 시작되자 세계유산 지정 전 시멘트 보수를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리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한 게, 보수했던 게 수천 건입니다. 수만 건 안 되겠나 싶은데. 근데 그런 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중략)**

문화재청은 땀질 보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허술한 지침에 대해서도 보고와 평가 체계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⑥ **(전략)** ◇◇◇는 ○○ △△서원을 비롯한 지역 문화재들이 시멘트로 땀질 보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략)**

수리를 진행한 업체는 시멘트 사용에 대해 “세계유산 지정 전의 일이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해당 수리 업체를 추적해봤습니다. 10년 넘게 ○○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보수 사업을 독점했는데, 최근 올해부터 20XX년까지 진행되는 수리보수 사업 공모에도 경쟁업체 4곳을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 대표 4명 가운데 3명이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중략)**

현 지침을 보면, 관리 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점검만 할 뿐, 현장 실사나 감리는 하지 않습니다. 수리 업체가 문제를 파악해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이상 관리 당국이 사전에 문제를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수리자격이 없어도 경험만 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게 했고, 보고를 누락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 보도 이후 전국 곳곳에서 세계문화유산과 보물급 문화재들이 부실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서원 수리를 담당한 업체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상시적인 예방관리 차원의 경미한 수리만을 담당하는 ‘문화재돌봄단체’로,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업무를 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5건의 보도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5건의 보도 영상 각 하단에 알림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기 타 사례 09 2022대구조정97·98/99·100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후속보도)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해당 신고가 '오인신고'라는 취지의 후속보도가 게재돼 조정 신청을 취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양마와 대마, 마리화나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섞어서 재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관련 전문가 발언을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카페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환각 성분이 없는 '양마'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시 '대마나 마리화나가 아닌 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이라는 시료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음에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재배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신청인 단체의 명예와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찰이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카페를 방문,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객관적 사실과 전문가 등의 순수한 의견표명을 보도한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임이 확인되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사정 등을 고려, 신청인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후속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문안 검토를 위한 속행 일정을 정하는 과정 중에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가 '오인 신고'였다는 취지의 후속보도가 게재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해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국내 첫 '○○ △△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 ◇◇의 한 카페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카페는 □□도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최대 5년간 월 1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업체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료 채취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료 채취 결과는 2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麻) 대부분은 모형인데, 이 중 일부가 대마 혹은 마리화나라고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시료 채취를 의뢰했다”며 “업주는 양마(洋麻, kenaf)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쉽지 않아 정확한 판단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 채취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다만 이 업체가 식약처의 재배 허가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약에 재배 허가를 받았다면 식약처에서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의 헴프 관련 전문가는 “양마와 대마, 마리화나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섞어서 재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략)

신청 후 보도문

후속보도문

보도제목: ◇◇ 카페서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는 ‘오인 신고’

본문내용: □□ ◇◇의 한 카페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고 접수된 의심 신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의심 신고 접수 이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5일과 7일, 두 차례 해당 카페를 방문,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지난 9월 15일 ‘대마나 마리화나가 아닌 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이라는 시료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일반인이 대마와 양마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잘 못 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카페 내 전시 중인 대마 모형은 영화 소품용 조화로 밝혀졌다.

세계 3대 섬유식물 중 하나인 양마는 고급 제지, 친환경 벽지, 자동차 프레임, 기능성 의류 등의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 환각성은 없으며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인기가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카페를 찾아 시료를 채취했다”면서 “이 시료에 대한 마약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마약 성분이 없는 식물)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카페 관계자는 “오인 신고로 그동안 사회적 기업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와 사업상 신뢰 관계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컸다”며 “카페 ▽▽▽은 ◎◎◎◎◎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와 ○○○ △△ 규제자유특구인 ◇◇에서 △△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기획한 카페다. 더는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